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 이유

- '94. 6월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기획단의 설치운영과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, 그리고 차량 신규구입 및 감축 등
-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정원증원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 골자

▷ 정원 : 26명 증원

○ 본청 : 1명

- 지방자치기획단 설치운영 5명
-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△1명
- 시군통합추진기획단 △1명
- 차량감축에 따른 정원 △2명

○ 직속기관 — 24명

- 신규소방장비구입 22명
-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1명
-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시장 차량구입 1명

○ 사업소 — 1명

- 도유림사업소 차량구입 1명

### 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21조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1. 본청 "892명"을 "893명"으로, 2. 직속기관 "840명"을 "864명"으로, 3. 사업소 "369명"을 "370명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원) 자치기획단 행정요원 정원 5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